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 안해도 된다

-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강제 판매 규정 삭제」 개정안 입법 예고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보건복지부 건의를 통해 개정시켜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량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써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 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

현행	개정안
<p>[별표 14]</p> <p style="text-align: center;">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p> <p>3) 식품자동판매기영업</p> <p>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p> <p>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별표 14] <개정 2010.6.30></p> <p style="text-align: center;">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p> <p>3) 식품자동판매기영업</p> <p>가).....현행 유지</p> <p>나).....현행 유지</p> <p>다).....현행 유지</p> <p>라) 항목 삭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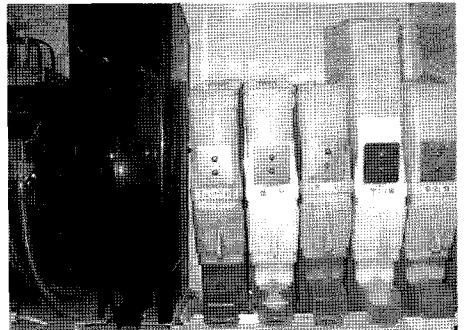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 삭제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커피자판기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 가능해 진다

“이번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판매 기능 삭제로 보다 경쟁력 있는 전용 커피자판기의 출시가 가능해 졌다. 시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커피자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만큼, 침체된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이번 국내산 차 판매 기능의 삭제는 커피자판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원치 않은 기능 채택을 없애고, 철저히 운영자와 소비자 니즈에 의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무엇보다 커피 판매 기능만을 갖춘 보급형 커피 전용자판기의 생산 출시 가능해 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커피자판기 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제품 가격대는 비싼데 비해 자판기 운영 효율을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수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보급형 커피자판기에 대한 니즈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커피 판매 기능도 넣고, 국산차 판매 기능도 넣고 하다보면 보급형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내산 차 판매기능이 삭제되면 커피판매 기능에 집중한 실속형 제품의 개발생산이 가능해 진다. 4-8칼럼 정도 이고, 제품 외형도 슬림화된 중형제품의 등장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자연 자판기 가격대도 저렴해 지게 마련이다. 특히 이런 제품은 운영자들의 선호하는 제품이니 만큼 시장에 있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커피·국산차 복합 판매 기능을 갖춘 제품들은 앞으로 이원화되게 된다. 시장 논리에 의해 국산차 기능의 포함을 원하는 곳은 그대로 기존 제품 컨셉을 가져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국산차 판매 기능을 삭제해 커피 판매에만 집중하는 제품으로 변경이 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선 커피자판기의 원가경쟁력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 니즈에 따라 쓸모없는 기능은 삭제하고, 가격을 저렴화한 제품의 출시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전용 커피자판기의 출시는 또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했다고 보긴 힘들다. 커피대비 낮은 판매율이 이를 대변한다.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까지 판매를 하는 제품군은 소비자들에게 어정쩡한 제품 컨셉으로 소구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커피자판기라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커피로 소비자들에 소구하면 될 일이다. 커피 자동 판매의 기능에 집중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증가시키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어정쩡함보다 나올 수 있다.

자판기 제조업체는 이번 국산차 판매 기능 삭제를 제품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원치도 않은 기능을 삭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시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커피자판기의 개발 상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운영업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효율적인 칼럼 운영 가능해져



일부 대학교에서 자판기 운영사업을 박모씨는 “학생들이 국내산 차를 넣어도 거의 뽑아 마시지 않다보니 회전율이 오래된 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부터 필요치도 않은 국산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씨의 사례처럼 자판기 운영업체는 매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국내산 차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용 판매해 온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는 국내산 차 판매 칼럼을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운영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호하지 않는 차를 억지로 적용해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국내산 차의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칼럼 운영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 국내산 차를 아예 칼럼에서 빼거나 일부 인기 있는 국내산 차만 선택적으로 적용판매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과거 일부 의무화되었던 차의 칼럼 운영이 이제 완벽하게 운영자 자율사항이 된 것이다. 운영자들은 과거처럼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국산차 채택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 중심으로 칼럼을 구성하면 될 일이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기능의 삭제는 커피자판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원치 않은 기능 채택을 없애고, 철저히 운영자와 소비자 니즈에 의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소비자, 더 위생적인 커피자판기 이용이 가능해 진다

이번 국산차 판매 의무 조항의 삭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음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지금까지 국내산 차의 위생상태가 커피에 비해 불량하다는 사실은 위생검사시 마다 자주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가 올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결과에서도 이 사실이 여실히 들어났다.

커피, 울무차, 코코아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558건을 검사한 결과, 커피자판기는 모두 위생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울무차 9건에서 일반세균 및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울무차의 부적합율이 높은 것은 판매량이 적어 원재료가 자판기 원료통에 장기간 보관되면서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동판매기에 국산차 적용판매가 커피에 비해 위생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 결과이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국내산 차가 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에 취약하다. 이런 음료를 소비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것도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 위생을 감안한다면 위생문제에 취약한 울무차 등의 국내산 차를 차라리 판매하지 않는 게 낫다.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더 위생적인 온음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관련 법령 개정이 갖는 효과가 크다 하겠다.

다류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판매 규정 개정 건의

지난 2009년 11월 초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의 내용

1. 관련 법률

[별표 9] <개정 2009.4.3>

업종별 시설기준(제20조관련)

나. 업종별 시설기준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응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응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책초점1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2. 현황

- 현재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 인해 자판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의무규정으로 인해 커피자판기 운영자들은 국내산 차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서 구색을 맞춰 할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영업의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더욱이 커피보다 위생문제가 더욱 민감한 국내산 차는 식약청이나 지자체의 위생점검시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커피자판기에 대한 위생불신을 가중시키는데 있어서도 한몫을 하고 있음.

3. 문제점 및 개정 당위성

- 단일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 1/3을 의무적으로 적용 판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판기 산업계는 납득하기 힘들다.
- 일반 전기 전자 제품이나 영업용기기는 그 제품에서 제공되는 핵심 콘텐츠가 무엇이나에 따라 상품의 가치와 경쟁력이 좌우됨. 따라서 그 해당 내용상품이 유통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품의 성격이나 특징은 시장 경쟁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게 마련.
- 영업용기인 커피자동판매기에 국내산 차를 1/3을 무조건 적용하려는 규정은 커피자판기의 단일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제품 컨셉을 모호하게 만드는 폐단을 초래(*단일 커피자판기가 커피·국내산 차 복합형 자판기가 돼버림).
- 유사품목으로 커피자판기와 같은 영업용기기로 활용되는 업소용 커피머신, 미니 커피자판기(*식당에 설치된 소형 제품)의 경우는 국내산 차 의무 판매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의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 국내산 차가 커피보다 위생문제가 취약

관련 언론 보도자료

서울시내 길거리 자동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냉커피와 울무차에서 세균과 대장균 등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중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온커피, 울무차, 냉커피, 코코아, 유자차, 생강차 등 판매제품 454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건(7.5%)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울무차는 총 30건 중 14건(47%)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고, 냉커피도 총 20건 가운데 9건(45%)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다량 검출됐다. 뜨거운 커피는 총 363건을 검사해 11건(2.8%)에서 일반세균과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돼 울무차나 냉커피에 비해 검출률이 낮았다. 울무차는 물과 희석되는 원재료의 양이 커피보다 많아 95℃까지 데워졌던 원수 온도가 온커피보다 빨리 식어 오염됐던 원재료에서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산 차는 대개 물과 희석되는 원재료의 양이 커피보다 많아 95℃까지 데워졌던 원수 온도가 온커피보다 빨리 식어 오염됐던 원재료에서 세균이 검출될 확률이 높음.
-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중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남.

□ 자판기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가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

- 자판기 제조업체는 운영자나 원하지도 않는 국내산 차 판매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에 따라 자판기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비싼 자판기 가격대가 형성이 되게 됨.
- 비싼 자판기 가격은 그 부담이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큰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자판기 시장은 큰 시장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커피자판기의 기능과 용량을 줄인 증형자판기의 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려는 시점인 바, 이들 자판기에도 현행대로 국내산 차 취급이 의무화된다면 제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힘들.

4. 개선 방향

“커피자판기는 그냥 커피자판기이어야 합니다. 왜 운영자나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나요?”

□ 커피자판기의 고유의 상품가치를 인정해 국내산 차 판매 위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현행 국내산 차 위무 채택 규정은 그 명분과 실효성에 있어 효력을 상실하고, 업계의 자율적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제는 단일 커피자판기를 인정해 제품 본연의 가치로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함.
- 국내산 차의 채택은 순수하게 제조업체와 운영자의 니즈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 방안.가 커피에 비해 위생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 결과이다.

▶ 법령개정방안 예시

기 준	개 정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나. 업종별 시설기준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라)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항목 삭제